

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

의안 번호	555
----------	-----

제 출 일 : 2024. 10. 10.
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제안이유

- 원정 화장 및 화장시설 고비용 등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, 경기 북부 6개 시가 함께 참여하는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을 추진하고자 함

2. 추진근거

- 「장사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 -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·보수를 하여야 한다.
- 「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업무협약·의회의결)

3. 주요내용

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양주시 백석읍 방성1리
- 부지면적 : 890,000㎡
- 총사업비 : 209,271백만원 (시비 184,792백만원 + 국도비 24,479백만원)
- 주요시설 : 화장시설(12기), 장례식장(양주시 단독), 봉안당(2만위), 자연장지(2만위)
- 참여 시 현황 (2023년도 통계청 자료, 단위 : 명, %)

구분	계	남양주	의정부	양주	구리	포천	동두천
인구수 (비율)	1,883,546 (100)	732,265 (38.9)	464,213 (24.7)	268,026 (14.2)	187,093 (9.9)	143,323 (7.6)	88,626 (4.7)

□ 협약 주요내용

- 공동형종합장사시설 사업비 (2023.12.31.인구 수 기준)
 - 사업비분담 : 10%(균등) + 90%(인구비율)

(단위:백만원)

구분	계	남양주	의정부	양주	구리	포천	동두천
합계	184,792	65,848	42,840	31,153	19,053	15,296	10,602

○ 분담금 납부 시기 및 납부액

(단위:백만원)

구분	계	2025.6.	2026.2.	2027.2.	2028.2.	2029.2.	2030.2.
합계	65,848	1,497	1,497	12,571	18,856	25,142	6,285
균등분담금 (10%)	2,994	1,497	1,497	-	-	-	-
인구비례 분담금(90%)	62,854	-	-	12,571	18,856	25,142	6,285

○ 수입금 정산

- (90%) 시설(화장시설·봉안당·자연장지) 이용자 수에 따라 분배 또는 분담
- (10%) 민원해결 등 예비비로 관리·집행

□ 그간 추진사항

- 2023. 9. 경기북부 5개 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추진 협약(MOU) 체결
*남양주, 양주, 의정부, 구리, 동두천 (5개시)
- 2023.12.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후보지 선정 [백석읍 방성1리]
- 2024. 6.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포천시 추가 참여
*남양주, 양주, 의정부, 구리, 동두천, 포천 (6개시)

□ 향후계획

- 2024.11. 공동형종합장사시설 6개시 공동투자 협약 체결
- 2025. 2. 지방행정연구원(LIMAC) 타당성 조사 완료
- 2025. 5.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
- 2025. 7. 공동형종합장사시설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
- 2027. 1. ~ 2029. 6. 공동형종합장사시설 건립 착공 및 준공

□ 붙임1

『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』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서

양주시, 남양주시, 의정부시, 구리시, 포천시, 동두천시(이하 “협약당사자” 라 한다)는 6개 市 공동으로 양주시 백석읍 방성1리 일원에 『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』(이하 “장사시설” 이라 한다)을 건립하기로 하고 제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장사시설 건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 간 사업비 분담 방법, 이용시설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협약당사자”란 경기도 내 양주시, 남양주시, 의정부시, 구리시, 포천시, 동두천시를 말한다.
2. “장사시설”이라 함은 양주시 백석읍 방성1리 일원에 건립되는 『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』을 말한다.
3. “사업비”란 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필요한 공사비, 보상비, 용역비, 부대비, 제세공과금, 이자비용, 주민지원사업비, 서울-양주 고속도로 IC 개설비용(광백저수지 하단), 인건비(TF구성 등 전담인력) 등 건립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.
4. “분담금”이란 양주시가 단독 부담하기로 한 장례식장 건립비용, 국·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비로 장사시설 건립을 위하여 협약당사자가 균등 또는 인구비례로 각자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.
5. “균등분담금”이란 「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」 중간결과 제시된 추정 소요액

209,271백만원에서 장례식장 건립비용과 국·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분담금에서 10%를 협약당사자가 균등 분담하기로 한 금액(각 2,994백만원)을 말한다.

6. “주민지원사업”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.

가. 방성1리	100억원 이내 기금지원사업, 수익시설(식당,매점,카페) 운영권(20년), 화장수수료 수입금 10% 적립(10년), 주민우선 고용, 화장수수료 면제
나. 주변지역	150억원 이내 기금지원사업, 화장수수료 면제 ※ 주변지역 : 장사시설 설치부지 경계 2km 이내 행정리·통
다. 백석읍	150억원 이내 기금지원사업

제3조(건립사업 시행) ① 장사시설 건립은 추진의 효율성,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양주시가 사업을 추진한다.

② 협약당사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·도비 보조금 확보, 신속한 사전행정절차 이행, 관련 기관과의 협의·건의, 장사시설 관련 양주시민 불편사항 해결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적극 협조한다.

③ 양주시는 다른 협약당사에게 사업 추진현황을 매 분기 통지하여야 하며,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협약당사자는 실무협의체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4조(장사시설 개요) ① 장사시설 개요는 다음과 같다.

1. (사업위치) 양주시 백석읍 방성1리 산75번지 일원
2. (부지면적) 약 89만m² 내외
3. (시설종류) 화장시설(화장로 12기), 봉안시설(20,000기), 수목장림(12,000기), 잔디형 자연장(8,000기), 장례식장(6실), 주차장, 진입도로, 공연장, 반려동물놀이터, 산림욕장, 공원, 그 밖의 주민편익시설
4. (추정 소요액) 209,271백만원

② 사업추진과정에서 협약당사자의 장사시설 수요, 인구추계 등을 고려하여 기본 및 실시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제1항의 장사시설 규모, 종류, 면적 등을 최종 확정한다.

제5조(시설의 이용관계)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종류 중 장례식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협약당사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한다.

제6조(사업비 부담)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담금의 10%는 협약당사자가 균등 부담하고, 90%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협약당사자별 인구비례로 부담한다.

제7조(부담금 납부시기) ① 협약당사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납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2025년 6월 말까지) 균등부담금의 50%
2. (2026년 2월 말까지) 균등부담금의 50%
3. (2027년 2월 말까지) 인구비례 부담금의 20%
4. (2028년 2월 말까지) 인구비례 부담금의 30%
5. (2029년 2월 말까지) 인구비례 부담금의 40%
6. (2030년 2월 말까지) 인구비례 부담금의 10%

② 협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시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시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연 5%를 가산한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부담금 납부방법) ① 양주시는 협약당사자의 부담금과 국·도비 보조금 등을 관리하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개설한다.

② 협약당사자는 부담금을 양주시에서 지정하는 특별회계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.

③ 양주시는 장사시설 건립 관련 기투자한 비용에 대하여는 납입 전

정산할수 있다. 이 경우에는 관련한 자료를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업비 정산) ① 양주시는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정산검사 결과와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협약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정산검사에 따라 발생한 부족한 차액 또는 공사잔액은 제6조에 따른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며,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납부 또는 반환한다.

제10조(수입금 정산) ① 봉안당 및 자연장지 연간 수입금의 10%는 장사시설 관련 민원해결 또는 주민 요구사항에 대응한 비용으로서, 특별회계로 관리·집행한다.

② 제1항의 비용과 제2조제6호가목의 화장수수료 수입금의 10%(10년간)를 제외한 수입금 정산은 전년도 시설(화장시설, 봉안당, 자연장지)의 협약당사자별 이용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배 또는 분담한다.

1. (운영수지가 흑자일 경우) 운영비 흑자분 분배
2. (운영수지가 적자일 경우) 운영비 적자분 분담

③ 그 외 수입금의 분배 또는 분담, 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본 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협약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제11조(사업의 중도포기 등) ① 협약당사자가 사업 진행 중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, 사업을 포기한 날까지 집행 및 투입(투자)된 사업비를 포기하고 남은 분담금의 30%를 위약금으로 납부한다.

② 양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업중단 시 전체 협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

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사업중단 시 양주시는 사업중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비에 대한 정삼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사업비 잔액은 제6조에 따른 분담 비율대로 정산한다.

제12조(장의·장례차량 운행경로) 협약당사자는 장사시설로 진·출입하는 장의·장례 차량이 신설 예정인 서울~양주 고속도로를 이용하도록 관내 장례식장에 적극 지도·안내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시설물의 소유권 등) ① 본 협약에 따라 설치되는 장사시설 및 토지, 그에 부속된 공작물, 물품 등의 소유권 및 관리권은 제6조의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 귀속된다.

② 협약당사자는 전체의 동의 없이 장사시설을 대부·매각·교환·양여·신탁 또는 대물변제를 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.

제14조(관할법원) 본 협약에 대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한다.

제15조(해석)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협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다.

제16조(관련자료 및 정보교환) 협약당사자는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상호간 적극 협조한다.

제17조(협약의 변경) 협약당사자는 업무협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당사자 간 전체의 동의를 얻어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18조(보칙)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
②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상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6부를 작성하고 협약당사자가 서명·날인 및 공증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. 11.

양주시장 강 수 현

남양주시장 주 광 덕

의정부시장 김 동 근

구리시장 백 경 현

포천시시장 백 영 현

동두천시시장 박 형 덕
